

제1016호 2025. 7. 25.

건설동향

BRIEF_{ing}

• 프로젝트 리츠 도입 의의와 전망

- 부동산 개발, 리츠가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 리츠 11월 시행
- 부동산 PF의 구조적 한계 해소 수단으로 주목
- PF 리스크 관리 강화 속, 프로젝트 리츠 활용 확대 기대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7)

- 이슈 1 : 건설안전 규제·처벌과 관련한 상반된 시각, 상반된 입법
- 이슈 2 : 지역경제·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올바른 방향은?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6.23.~'25.7.20.)



프로젝트 리츠 도입 의의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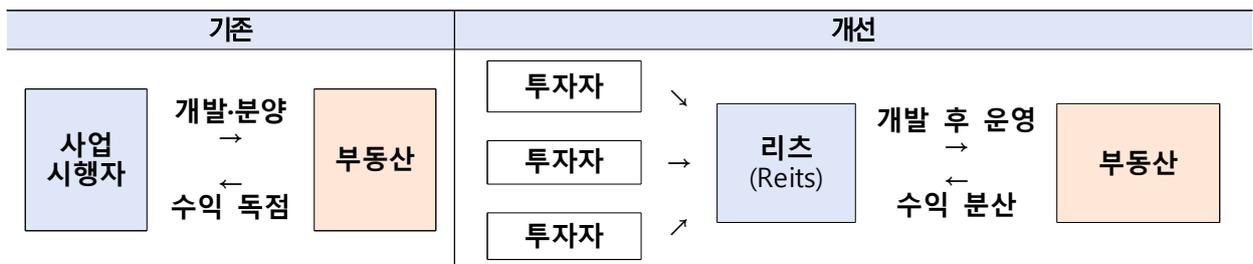
-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 대안으로서 역할 기대 -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부동산 개발, 리츠가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 리츠 11월 시행

-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025.5 공포)되어 프로젝트 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프로젝트 리츠는 작년(2024.6.17)에 발표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었으며, 그 후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기존에 리츠로 부동산 개발시 규제가 많아 ‘PFV 개발 → 리츠 인수’라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됨. 이를 개선하여 부동산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리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취지임.
- 기존 리츠가 완공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였다면, 프로젝트 리츠는 토지 매입, 개발, 시공, 임대,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리츠에서 책임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개발 단계는 사모로서 일반 투자자 보호 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함.
 - 준공 후 안정적 운영 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이원적 방식으로 운영됨.

〈그림 1〉 리츠 방식 개발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



자료 :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6.19

부동산 PF의 구조적 한계 해소 수단으로 주목

- 프로젝트 리츠의 정책목표는 단순 분양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책임운영개발 활성화와 한국형 롯본 기힐즈와 같은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음.
 - 기존 시행자는 개발 후 분양 이익 실현에 초점을 맞추므로, 상가의 과잉 공급 문제,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 등으로 수분양자에 개발 리스크가 전가되어 개발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책임운영개발을 통해 분양 대신 임대·관리 지속, 창의적 공간을 조성하여 장기적 도시발전 비전 제시, 특화 개발로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도시 활력 제고 등을 도모함.
 - 시행사가 자산을 직접 보유·운영하는 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는 특화 개발, 랜드마크 창출 등 장기적 가치 제고가 가능하며, 상권 침체나 과잉공급 등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 프로젝트 리츠의 가장 핵심 특징은 부동산 PF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데 있음.
 - 현재 부동산의 대표적 개발수단은 PFV로 저자본-고레버리지 청산에 초점을 맞춤. 일반 특수목적회사 (SPC) 대비 자본금 최소 50억원,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등 설립 요건이 까다롭지만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주로 중대형 규모의 개발사업에 사용됨.
 - 부동산 PF 사업은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통상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 정도인 자기자본으로 토지계약금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97%의 토지잔금, 공사비 등을 대출로 충당하는 구조를 가짐.
 - 사업 성공이 불확실한 만큼 신용도가 높은 건설사가 대출을 보증하고, 공사비 일부는 수분양자의 계약금, 중도금으로 충당하며 건설사는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낮은 자본금 및 높은 차입금 구조로 인해 성공 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사업 실패시 금융기관, 건설사, 수분양자 등으로 리스크가 전가되어 연쇄부실 위험이 큼.
 - 지난 십수년간 경기 상황에 따라 PF 사업의 부실화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프로젝트 리츠를 활성화하여 시행자의 자기자본과 책임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로 추진됨.

-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기존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자본·고부채 구조, 단기 금융 중심,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PFV의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3.15%인 반면, 개발리츠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27.3%에 달하며 공공부문이 관여하는 일반형 개발리츠는 40.6%로 나타남(24.6.20). 사업 실패 시 손실 흡수력이 커지고,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지 않아 재무 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
 - PFV는 차입 한도가 없어, 무리한 레버리지로 인한 부실 위험이 상존하는 반면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의 2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10배)까지만 차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함.

- PFV는 분양 후 해산하는 구조라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떨어졌으나, 리츠는 장기적 운영과 수익 배분이 가능함.
- 프로젝트 리츠는 상장 또는 공모를 전제로 하여,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운용 내역, 예상 수익률 등을 공개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동향과 전망, PF 리스크 관리 강화 속 프로젝트 리츠 활용 확대 기대

-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서 프로젝트 리츠와 함께 시행되는 지역상생 리츠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상생 리츠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주식 공모가격을 제한하는 리츠로서 지역거점사업의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 우선 공모 방식으로 추진됨.
 -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 리츠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 리츠, 테크리츠¹⁾로 개발하고, 지역 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인천도시공사는 재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개발하여 20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정부는 현재 부동산 PF 부실의 정리 및 재구조화 과정에서 PF 사업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도모하고 있어 향후 프로젝트 리츠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큼.
 - 부동산 개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책임준공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
 -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서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예정되어 있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우량 용지 일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 시행자가 개발 후 직접 운영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를 검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과 운영이 결합된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반복되는 PF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관점에서도 기존 PF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서 큰 의미를 가짐.
 - 제도 도입 초기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요구됨.

1) (헬스케어리츠) 리츠가 시니어주택을 개발·운영하며 의료 관련 서비스 제공
(공공인프라리츠)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및 적기 생활 SOC 공급을 위한 리츠 개발·운영
(테크리츠) 리츠가 AI 등 미래산업 필수 자산인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개발·운영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7)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지난 약 1개월(2025.6.23.~2025.7.20.)간 국회에서는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 개최 및 현안 질의 등 복잡한 일정 속에서도 평소 대비 소폭 증가한 총 580건의 법률안이 신규 발의되었으며, 이 중 건설산업 관련 주요 입법안은 33개 법안이 발의됨.

이달에는 어려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물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관련 법률이 8건 발의된 것이 환영할 사항인 점과 더불어 「건설안전특별법안」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까지 건설안전을 포함한 산업재해 해소를 위한 규제 입법안이 중점 발의됨.

이슈 1 건설안전 규제·처벌과 관련한 상반된 시각, 상반된 입법

- 최근 계속된 건설안전 관련 규제 신설 및 처벌 강화 기조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규제 만능주의’의 문제 지적이 피규제자인 산업계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경향은 지난 '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두드러진 상황으로 이 외에도 계속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련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건설안전 규제와 처벌 강화가 계속되고 있기에 중복규제 및 과잉 처벌 등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물론 최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 최근 소폭의 건설 사망자 수 감소는 건설 착공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업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속된 규제와 처벌 강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입법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 당장 이번 달만 하더라도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과잉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정책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건설안전 규제와 처벌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어 입법부의 상반된 시각을 엿볼 수 있음.
 - 우선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142호)의 경우 현행법은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법 제정 목적은 형사처벌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기에 정당한 기업활동 위축 방지를 위해 법 제명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시함.
 - 이와 반대로 이달에는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

성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한한 입법안도 상존함. 지난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입법 시도되었던 「건설안전특별법」이 그러한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함(의안번호 11151호).

-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산업은 타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며, 특히 발주자, 시공자(원청)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여야 하기에 별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율해야 함을 제안 이유에 담고 있음.
-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달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 규제의 강화 입법안이 발의됨.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의안번호 제11455호)을 살펴보면, 사업주에게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 위기 상황 시 작업중지 의무 확대와 더불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적 작동 확대를 위해 하청근로자를 포함한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과 소득 보전 의무 부여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제안함.
- 이러한 입법안과 더불어 행정부 또한 새 정부의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국정 기초의 원칙 아래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관리 평가 비중 확대,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추가 관련 규제 강화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기에 피규제자인 산업계의 우려와 갈등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넘어 유사 법령과의 중복규제와 과잉 처벌에 대한 피규제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법 제정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규제 및 처벌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전방위적 검토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 대표적으로 다음 몇 가지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우려가 예상되는데, 가장 우선하여서는 해당 법률안의 경우 특별법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나, 근로자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율(제3조)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해당 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이 구분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혼란 가중 및 선의의 피해자 양산이 우려됨.
-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일반법이기에 특별법이 우선 적용됨은 인정되나, 「중대재해처벌법」도 특별형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¹⁾할 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 처벌 대상의 혼선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두 번째로는 타 법률을 통해 이미 처벌 규정이 촘촘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임. 현재 건설안전사고 발생 시 아래 표와 같이 유사 법률을 통해 처벌이 촘촘히 마련되어 있고 해당 처벌 내용 또한 계속된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벌 규정 마련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1)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은 형사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하는 특별형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타 일반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가 아닌 별개의 법임.

〈건설공사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현황(요약)〉

소관 법률명	처벌 내용	대 상
건설안전특별법안 (법안 계류 중)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	법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설사업 이해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 징벌적 손해배상(5배 이내)	사업주
	• 50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업주
	• 영업정지 요청(2명 이상 사망 시) •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건설산업기본법	• 영업정지 처분(2명 이상 사망 시)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안전법령위반+주요시설물 구조상 중대한 파손+사망)	법인 사업주 등
	• 10억원 이하 벌금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및 상호협력 평가 시 감점	법인
건설기술진흥법	• 부실벌점 반영 → PQ 감점/공동주택 선분양 제한(주택공급규칙)	법인
국가지방계약법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 시 신인도 감점	법인
형법	•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처벌	사업주 등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의문(2025.7.) 기준 저자 수정

- 세 번째로는 법안에서 가장 강력한 피규제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비현실적 과징금 부과 기준 임. 법률안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업종분야 매출액 3%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약 3%인 상황²⁾인 점을 고려할 때 1건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수준이며, 기업 규모별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실 사고임에도 상한선 없는 과잉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함.
- 이 외에도 타 공사업의 해당 법률 적용 배제의 불합리성, 원도급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처벌 규정의 불명확성 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안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법 제정의 실효와 필요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반복된 규제 강화 → 피규제자 반발 및 사회적 비용 증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설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사후 처벌 중심의 계속된 규제 양산이 아닌 사고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규제 재점검과 관련 부처와 업역을 뛰어넘는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제는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점에서 단편적 규제 강화가 아닌 보다 거시적 논의가 입법부와 행정부뿐만 아닌 관련 관·산·학·연이 합심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2)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3년 평균 3.45%) : ('22) 4.06%, ('23) 3.14%, ('24) 3.15%

- 예를 들어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경우 건설안전사고의 원인을 발주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사업 이해관계자 모두의 개선 방안의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있어 기존 대비 진일보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음.
- 허나, 여전히 처벌 중심의 법안인 점과 더불어 상호 배타적 거래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설이해관계자 중 일부에게만 책임을 집중하는 입법안은 피규제자의 순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한계 발생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종합 고려한 한층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길 희망함.

이슈 2 지역경제·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올바른 방향은?

- 공공이 구매하거나 도급 위탁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공사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이하 “지역제한”)은 그간 지역 고용증대, 하도급 및 자재 납품 등 당해 지역 소재 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함.
- 공공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이 가능한 공사는 지방계약 기준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와 기타 공사업의 경우 10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제한으로 발주가 가능함.
- 이와 관련하여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1178호)은 일부 기업들이 입찰 참가 전 본점 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낙찰 후 본점 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제한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기업의 낙찰 기회가 침해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제한 발주 사업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때까지 본점 소재지 변경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 이는 지역제한의 취지 훼손 방지와 지역경제,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개선안으로 사료됨. 다만, 현재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건설기업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조례를 통해 입찰참가일 전 수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만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본 입법안 논의 시 해당 중복규제의 해소 방안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사전 또는 사후 규제 간의 합리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함.

〈조례를 통해 지역제한 발주 공사의 입찰자를 제한하는 지자체 현황(재해복구 공사 한정 포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	-	-	-	-	-	-	-	120일 제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종합
90일 제한	-	120일 제한	-	-	-	-	-	3개/17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6.23.~'25.7.20.)

※ **규제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신설·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p>「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006호(최형두의원 등 10인)] ('25.6.23.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발전원(發電源)으로서 현재 사용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용량이 큰 대형원전으로 이들 원전은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 장기간 건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 전력망이 작은 국가의 도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이거나, 그 대신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모듈 기반으로 용량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탄력 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및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중소형원자로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대 - 이러한 글로벌 전력시장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중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으로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고유의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실증하고 상용화할 필요 - 또한, 우리나라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 마련 필요 - (제안방향)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연관 내용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 지정 권한 부여(안 제12조) ▪ (건설산업 연관 내용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사업 및 국제 협력사업 지원 권한 부여(안 제13조) ▪ (건설산업 연관 내용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실증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시범사업 실시 권한 부여(안 제14조) ▪ (건설산업 연관 내용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중소형원자로시스템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 ▪ (건설산업 연관 내용⑤)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관련 안허가 신속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우선처리 특례 등을 규정(안 제22조 및 제23조)
<p>「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017호(안태준 의원 등 11인)] ('25.6.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 중 - 허나, 이상기후, 시설물 노후화 및 대형복합개발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관라·감독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여건은 열악하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하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안 제47조의2)

법률명	주요 내용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032호(한정애 의원 등 10인)] ('25.6.23.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이 제정되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동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 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사업 실시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한계 내포 ▪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건설·매입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정비에 관해서는 미규율 - (제안방향)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 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사업 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안 제2조) ▪ 사업 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추진 도모(안 제7조) ▪ 사업제안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사업 주체를 지원해 사업을 조속 추진 지원(안 제15조) ▪ 공공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16조) ▪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 등을 허용키 위해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 부여(안 제19조) ▪ 구역 내 기존 토자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착을 위해 협의양도 시 현물보상 실시 규정(안 제28조) ▪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해 이주신청,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 및 임시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마련(안 제30조 및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041호(김교홍 의원 등 10인)] ('25.6.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제도를 도입 중 -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인천포항울산광양여수서산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선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정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검토 중인 상황 - (제안방향)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안 제63조의4 신설)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042호(윤종균 의원 등 10인)] ('25.6.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추가 문제 또한 안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반복 제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미흡 상황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공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 - (제안방향①)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 조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 강화(안 제34조제1항) - (제안방향②)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4조제8항),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이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안 제34조제9항) ▪ 국토교통부의 공동 복구 등의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안 제54조제1항제8호, 제56조제3항제7호)
<p>「건설기술 진흥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051호(문진석 의원 등 10인)] ('25.6.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강고 등의 교량이나 철골구조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의 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등을 심사하여 4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므로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이나 증명을 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와는 부합치 않는다는 측면이 있어('24.2.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 및 지정취소 요건 강화 및 심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안 제58조, 제59조, 제79조)
<p>「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055호(강준현 의원 등 50인)] ('25.6.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입법부와 행정부의 효율적 협업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치를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국민주권의 공간적 확장을 통해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가야 할 필요성 대두 - (제안방향)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연관 내용①)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및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정의 ▪ (건설산업 연관 내용②) 행정수도 이전계획 및 건립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수도건립위원회는 주요국가기관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② 우주항공청, 새만금 개발청을 제외한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은 제2항제1호의 이전대상 주요국가기관에 포함 ▪ (건설산업 연관 내용③)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 등의 이전계획(안 제12조 및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통령집무실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수도로 이전 ② 국회의사당과 국회 소속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권회복, 민주항쟁, 시민권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민주권지역을 지정 ③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 등”이라 한다) 지정(안 제17조) ▪ (건설산업 연관 내용④) 행정수도건립사업 시행(안 제27조 및 제28조) 및 행정수도건립청 설치(안 제49조 및 제50조), 행정수도건립 특별회계 설치(안 제55조에서부터 제57조)와 특례규정 마련(안 제72조 및 제75조)

법률명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142호(민형배 의원 등 12인)] ('25.6.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법 제정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나,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형사 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음에도 현행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초점이 '예방'이 아닌 '처벌'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취질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당한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본 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중대재해의 예방과 사후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위상 명확화 목적)(안 제명 및 제2조의2)
「건설안전 특별법안」 <div style="background-color: #f0808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10px;">규제처벌 강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051호(문진석 의원 등 11인)] ('25.6.27.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건설공사는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도로·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 - 이에 발주자는 적절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특별법 발의 - (제안방향①)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관과 공사비용이 적절한지 인허가 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 (제안방향②)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 (제안방향③)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 (제안방향④)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 (제안방향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5조) - (제안방향⑥)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
「주택법」 <div style="background-color: #f0808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10px;">규제 강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164호(김정재 의원 등 10인)] ('25.6.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법률명	주요 내용
	<p>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대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①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②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p>「정보통신 공사업법」</p> <p>규제차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168호(정동영 의원 등 17인)] ('25.6.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63.3%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며 미래지향적 스마트홈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나, 지난 2021년 아파트 월패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아파트 거주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하자판정 처분 소송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의 원인이 설계부실에서 기인한 것임을 판시하여 홈네트워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사례 존재 - 한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에 있어서도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의 참여 배제로 인해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총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 또는 부족하게 반영됨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건물의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건물 생애주기 동안 이용 불편을 감수해야 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건축주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 상존 -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가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품질 및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개선 필요 - (제안방향) ①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②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p>「지방 계약법」</p> <p>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178호(이광희 의원 등 17인)] ('25.6.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도록 규정 중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낙찰 후에 본점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9조제6항)
<p>「도심융합 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200호(장철만서범수 의원 등 12인)] ('25.7.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나, 특구 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2)

법률명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202호(서범수장철민 의원 등 10인)] ('25.7.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토록 규정 중 - 그러나,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시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에 개정 필요 - (제안방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안 제40조제3항제8호)
「건설기계 관리법」 차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292호(강승규 의원 등 10인)] ('25.7.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 조종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에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제안방향)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40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313호(민홍철 의원 등 11인)] ('25.7.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창원시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권으로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작음에도 대도시권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형성됨에 따라 도시의 공간이 단절되고, 특히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통합을 가로막는 등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개선 필요 - (제안이유②)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행위를 열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스마트농업, 민영도시농업농장 등 시설의 설치나 산림자원 육성에 필요한 행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제안이유③)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서는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고, 다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한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 (제안방향)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의 확산가능성이 상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비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폐지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상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그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안 제3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안 제3조제3항)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시설, 민영도시농업농장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산림자원의 육성에 필요한 행위 등 추가(안 제12조 제1항제1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10호)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을 우선적 고려(안 제15조제4항)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 추가(안 제16조제1항제1호 다목)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위임사무 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안 제29조제3항)
<p>「건설기술 진흥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314호(염태영 의원 등 10인)] ('25.7.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별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소한 공사비 산정이 빈번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발주자의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법률에 명시(안 제45조제3항)
<p>「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337호(김희정 의원 등 10인)] ('25.7.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현행법에서는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구분하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사업 착공 후에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발생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 - (제안이유②)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 조사를 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요 굴착공사 진행 완료 후에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 (제안방향)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에 추가하여 상시적으로 영향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안 제20조제1항 등)
<p>「조세특례 제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367호(윤영석 의원 등 12인)] ('25.7.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준공 후에도 미분양(약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이 상당수 적체되어 지역경제와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약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

법률명	주요 내용
	<p>(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②)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시행 중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더딘 상황이며, 지역 주택시장 안정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특례 적용 기한의 추가 연장이 필요 ▪ 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상당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에 따라 현행 6억원 이하 주택 적용 대상도 적어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 필요 - (제안방향)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면적 등으로 개정(안 제98조의9)
「지방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369호(김형동 의원 등 13인)] ('25.7.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 중이나,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제안방향)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370호(진성준 의원 등 12인)] ('25.7.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2020년 12월 삭제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장이 안전시설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대두 - (제안방향)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8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378호(윤영석 의원 등 12인)] ('25.7.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고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더딘 상황이며, 지역 주택시장 안정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추가 연장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상당히 공급되고 있고,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현행 3억원 이하 주택 적용 대상도 적어지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아파트 전용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하되 취득세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게 개정(안 제33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397호(문진석 의원 등 12인)] ('25.7.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

법률명	주요 내용
	<p>한 '미분양 안심판매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며, 해당 사업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공공이 일시적으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준공 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해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이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동안 각종 세금을 직접 납부하고, 환매 시 해당 비용을 사업주체가 환매대금에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납부하는 구조로 세금이 면제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환매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욱이 지난 2008~2013년 이뤄진 환매조건부 매입 당시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면제한 바 있기에 함께 고려 필요 - (제안방향)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수도권 소재 주택 제외)에서 발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과 더불어, 주택건설업자의 재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안 제34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400호(윤영석 의원 등 13인)] ('25.7.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산출된 취득세에서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약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약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 ▪ 일부 비수도권 지역(대구 서구, 경남 합천, 전남 곡성, 강원 고성 등)을 중심으로 2024년 현재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안정적 주거 환경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 또한 고려 필요 - (제안방향) 출산육아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되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안 제36조의5)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440호(복기왕 의원 등 18인)] ('25.7.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관할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계획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당초 체결한 공사비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로 인하여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례로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635명으로 아파트 840세대, 오피스텔 165호를 건립하는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는 당초 기존 공사비보다 30% 많은 공사비를 지역주택조합에 증액을 요구하였고, 중도금 대출 이자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사업 구역 내 건물 등 매입비용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등 조합원의 부담금이 2배로 증가하면서 조합원의 부담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5)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441호(이연희 의원 등 15인)] ('25.7.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단열, 방음, 위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도심 내 주거지인 쪽방 밀집지역을 재정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인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은 그간 쪽방 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하고 있으나, 타 사업

법률명	주요 내용
	<p>보다 낮은 사업성,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토지 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발생 중인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토지 등 소유주의 부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도심에서 이뤄지는 유사한 개발방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있어 쪽방 밀집지역의 공공주택사업의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여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등 소유주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 <p>- (제안방향)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추어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안 제57조)</p>
<p>「산업안전보건법」</p> <p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2px;">규제차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455호(정혜경 의원 등 14인)] ('25.7.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현장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 ▪ 또한,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작업중지 명령 실질화를 위한 다음의 사항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규정 ▪ 현행법상 규정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기후로 인한 위협과 감정노동 등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안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과 소득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하청업체의 공기, 손실보전 등에 대한 원청 업체의 연대 책임을 규정(안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5항) ▪ 안전 작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 및 개선 조치 전에는 다시 작업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한 현장 개선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정(안 제55조) ▪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처벌 조항 도입(안 제168조)
<p>「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473호(김도읍 의원 등 11인)] ('25.7.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고난도 해상 매립 공정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에서는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치 않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명확히 규정(안 제9조의3)
<p>「군사기지 및 군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477호(안철수 의원 등 14인)] ('25.7.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 일정 구역에 대하여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건축물의 건

법률명	주요 내용
보호법」	<p>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은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할 때,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하고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안전구역 내 고저 차가 있는 경사지에서 공동주택 등 규모가 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가장 낮은 부분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에서 45미터이지만 가장 높은 부분에서는 지표면의 고저 차만큼 건축물 높이가 낮아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허용 높이 45미터까지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어렵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현행법 시행령의 지표면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 정의로 신설하는 한편, 경사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그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안 제2조제16호 등)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498호(하성무 의원 등 11인)] ('25.7.16.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발전이 전력공급의 중요한 수단이나, 기존의 원자력발전 방식은 대규모 부지와 많은 초기 투자 비용, 건설의 장기화, 안전성 우려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기에 이의 대안으로 최근 차세대 원전기술인 소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 SMR)가 주목받고 있으며, EU·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소형원자로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향후 세계 원전시장은 소형원자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 (제안방향)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특별법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연관 내용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형원자로시스템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실시 가능(안 제11조 및 제12조) ▪ (건설산업 연관 내용②) 정부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보급·확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사업을 추진 가능(안 제14조) ▪ (건설산업 연관 내용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등 특구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안 제15조)
「국가 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505호(박상혁 의원 등 10인)] ('25.7.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의 신·증축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으나, -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거주민의 정주, 출퇴근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거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에 위탁(안 제38조의4 등)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523호(염태영 의원 등 14인)] ('25.7.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상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규정 - 허나, 현행법은 사·도지사(국유재산)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법률명	주요 내용
	<p>제기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1545호(백혜련 의원 등 10인)] ('25.7.1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행정청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행정청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도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토지 소유의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한정하여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토지 소유의 요건 등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명확화 필요 - (제안방향)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안 제86조제5항)